

[사내변호사]

##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의 작은 시작

- 종합편성채널 방송국에서의 계약서 실무 및  
저작권협상의 경험을 토대로 -

허중혁<sup>1)</sup>

· TV조선 전략기획실 사내변호사

### I. 첫 출발에 즈음하여

작년 6월 말부터 인연을 맺게 된 종합편성채널 방송국에서 일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이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느 것 하나 명확히 정해진 바 없었던 로스쿨 3년의 지나간 세월들이 오버랩되기 시작한다.

예상과 전혀 다른 양상을 겪어야 했던 로스쿨에서의 3년간의 시간, 그 기간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준비했던 것 같다. 그 기간 동안 힘들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었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인 심인숙 교수님이 내게 메일로 주신 말씀이었다. “주변

- 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우등졸업(하계 차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재무전공 수료, 제47회 사법시험 1차 합격, 대한상사중재원 실무수습, 특허법인 유미 실무수습, 법제처 일본 도쿄 아카사카 소재 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 실무수습 2회, 서울중앙지방 법원 실무수습, 김앤장 심화실무수습,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정수습, 중국 빼이징 소재 정법대학 법무연수, 차세대 콘텐츠 재산학회 회원,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회원, 일본어 능력시험(JLPT 1급) 취득, TV조선 인턴 후 입사, 엔터테인먼트법의 최신 쟁점 공저 출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석(총장상) 졸업,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꿈을 향해 무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 말씀을 잊지 않았던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3년의 기간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다. 국내외에서 하는 실무수습에는 거의 모두 지원하여 참여했으며 그 와중에도 성적을 내기 위해 5시간 이상을 자 본 적이 거의 없었고, 3학년에 이르러서는 교수님과 공저로 책을 내기도 했다.

사법시험 공부 때는 법학만 공부하면 되었지만, 로스쿨 2학년 때부터 시작되었던 대형 로펌들의 리쿠르팅에서부터 각종의 실무수습 등의 과정들은 법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 갖추기 힘들 정도의 다양한 경력과 스펙을 요구하는 것들이었다. 다행히 어릴 적부터 공부했던 일본어 덕분에 로스쿨 재학 기간 동안 2번의 일본 로펌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6번이나 일본을 오고가면서 일본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커다란 수확이었다.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것과 시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한 이유로 시작한 방송국에서의 인턴. 여름부터 12월1일의 개국 시점까지 겪은 일들은 사법시험과 로스쿨 기간 동안 법학 공부에 지친 나에게서 흥미진진한 경험으로 다가왔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대형 로펌이 선뜻 받아주지 않았지만, TV조선은 변호사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부족한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 로스쿨 졸업 이전에 먼저 채용을 해 준 덕에 3월23일 합격자 발표 후 변협에 등록까지 한 지금, 방송국의 사내변호사로서 저작권 협상에 투입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방송국에서 하게 되었던 계약서 검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회사법 일반과 일본 관련 업무, 저작권 협상 등의 과정들은 일반 변호사들의 송무와는 많이 다른 것이었고 전혀 새로운 공부를 요구했다. 앞으로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후배 로스쿨 변호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에서, 그간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 II. 방송국 법무업무의 내용

### 1. 계약서의 검토

처음 계약서를 검토하기 전에는 법학 실력이 아직 부족함을 걱정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담당 PD분들과 논의를 거치면서 절감한 사실은 방송 분야에 대한 실무적 지식(외주제작의 현실이나 협찬 등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었다.

방송 산업은 진정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총합된 그 자체라 할 만 했다. 드라마 하나가 방송되기까지 외주제작사와 연기자, 음악·미술 감독 등의 외부인력과 이를 조정하는 방송사 PD와 대본의 작가 등 수많은 인력들이 각자의 경제적 이해계산을 거쳐 오랜 기간 작업을 함께 하여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방송국 소속 법률가는 저작권을 가진 작곡가와 작가는 물론 저작인접권을 가진 연기자와 음반제작자, 음악 실연자들의 권리와 의무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시청률이 높아야 광고를 대량으로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광고수익이 전체 수익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방송사의 계약서 내용에는 시청률 인센티브 규정도 명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외주제작사가 제작하는 드라마의 저작권은 방송국에 귀속되는 것이 지상파 방송국의 제작관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종합편성채널의 개국을 기점으로 하여 방송사의 수는 늘어난 반면에 외주제작사들은 독립제작사협회를 만들어 세를 구축하는 등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종합편성채널 방송국으로서는 기존 지상파 방송국처럼 압도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 기존의 지상파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협찬을 받는 경우 제작비를 협찬금액만큼 깎는 조건으로 협찬금을 외주제작사에 귀속되게 하는 관행이 있어 왔으나, 종합편성채널 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금액만큼 제작비를 깎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기업법무에 있어서는 영문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경우가 가장 많지만, 방송국의 경우는 한류 콘텐츠의 수출이라는 경향 때문에 일본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과거 10년 전에는 우리가 일본의 프로그램을 모방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현재는 일본이 우리의 프로그램을 수입하려는 등 더 관심이 많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다. 콘텐츠의 수출 목적 외에도 방송업무의 협력 차원에서 오랜 기간 교류가 이루어져 왔는데, TV조선의 경우에도 나고야에 있는 CBC(중부일본방송), 도쿄에 있는 TBS, 오사카에 있는 MBS, 후쿠오카에 있는 RKB 등과 교류를 맺고 있어서 한국 담당자들과 접할 기회가 많았다.

기본적으로 일문 계약서의 용어는 우리 법률용어와 정확히 일치하며 약간의 예외적으로 다른 용어도 과거에 우리가 쓰던 용어들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도급이나 압류 및 질차라는 용어에 대해서, 일본 법률은 청부(請負, うけおい)나 차압(差し押さえ) 및 수속(手續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어에 申告(신고)라는 단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실제 법 조문

이나 계약서를 보면, 신고라는 용어 대신에 申し込む, 신청이라는 용어 대신에 申し立てる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해제 외에 해지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법률은 해제라는 용어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문 계약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 2.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관련한 업무는 기일출석 요구서가 법무담당인 필자에게 송달되면서부터 시작된다. 법무담당자가 그 사본을 조정대상 보도를 작성한 기자 및 그 담당부서의 부장급 상급자에게 보내게 되면, 기자와 그 상급자분들이 조정신청서 내용을 반박하는 취지의 사실관계 서면을 작성해 보내 주게 된다. 법무담당은 보도본부 쪽에서 보내 온 사실관계 서면을 참조로 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할 답변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한 후, 지정된 기일에 부장급 상급자와 함께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것이다(방송사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인감이 찍힌 위임장 제출 절차가 필수적이다). 부장급 상급자나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대리인이 되면 조정절차 내에서 조정이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므로,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조정 법정 내에서는 참관인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메이저 언론사에 일하고 있었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담긴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관련 사건과 서울시장 아들 병역 관련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는 애초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 신청인 측과 반론보도를 하는 쪽으로 잘 합의가 되었으나, 일부 인터넷에서는 마치 언론중재위원회가 TV조선의 패소를 의미하는 결정을 명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 3. 회사법 일반 업무

상장 회사를 포함한 일반 기업들은 3월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정기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게 된다. 더군다나 2012년도는 4월15일부터 개정 상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때문에, 정관을 비롯한 각종 회사규정들을 재검비해야 하는 등 많은 이슈가 논란이 되었다.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의결정족수가 강화되고 사업기회유용금지 규정이 도입되어 정관의 개정이 필요했고, 그 외에 집행임원 제도가 상법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기존에 관행으로서 존재하던 집행임원을 폐기하느냐 아니면 상

법상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서라도 집행임원 제도를 계속 유지하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회사의 지배구조를 좌우하는 정도의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임원회의도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비상장 회사들은 상장 회사들에 비해 3월에 처리해야 할 이사회와 주주총회 관련 절차가 완화된 채 있어서 절차에 대한 자문이 그다지 어렵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필자로서는 처음 그 절차를 마련하여 보고해야 하는 것이어서 다른 상장사의 절차도 참조를 위해 조사했고, 사내 재무부서 및 인사부서와 의논을 거치기도 했다.

#### 4. 방송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사안 검토

TV조선과 같은 종편채널에 대해 법적으로 정확하게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고유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가지지 못한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개별 PP들은 SO와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채널번호를 부여받아 방송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1년 12월1일 개국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각 종편사들은 MSO들과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무료송출을 원칙으로 하고 추후 별도 합의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각 종편사들이 MSO들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청구하는 법적 고민을 시작했고, 필자도 프로그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올리기도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MSO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고 종합편성 채널을 비롯한 PP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들이 MSO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 내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서의 내용 중 지나치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 민법 제103, 104조 위반 외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주장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한다.

#### 5. 저작권단체와의 협상

한미FTA의 이행을 위해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연장되고 법정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는 등으로 권리의 보호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방송사로서는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정도의 많은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가뜩이나 낮은 시청률로 인한 광고수입의 저조로 인하여, 저작권 협상 문제는 종편 4사들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안이었다.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저작권보다 저작권료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었는데,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종편 4사의 경우에 드라마 등의 재방송 이상이 많은 상황에 기인한다.

실무적으로는 저작물 관리의 번거로움과 이용허락의 복잡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신탁관리업자들이 권리자들로부터 권리를 위탁 받아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저작권단체)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은 이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하는 것으로, 방송사들이 저작권단체들과 협상을 계속 하면서 조정해야 하는 부분도 징수규정이 없는 경우는 징수규정에 들어가게 될 요율(징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에 들어가게 될 요율)인 것이다.

이들 저작권 관리단체들이 종합편성 방송사업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현재 종합편성채널 4사가 공동으로 협상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케이블TV협회 등의 단체들에 자주 방문하면서 정보를 습득하고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새벽까지 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긴 논리 싸움을 해야 했으나, 방송실연자협회나 한국연기자 노동조합 등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현재 한국의 모든 연기자들의 사진과 연락처가 든 수첩을 받기도 했다.

## 6. 일본 관련 업무

필자의 일본 관련 업무는 계약서의 검토에 한정되지 않았고 TV조선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인들과의 접촉은 전부 필자가 담당하게 되었다. 한동안 1주일에 한 번은 일본인들과 미팅을 하거나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고, 특히 2011년 12월 1일 개국 시점을 전후해서는 일본 주주 및 협력사의 많은 관계자들과 통화하고 그들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여 보고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특히 주주들에게는 이사회와 주주총회 후에 각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보내어야 하는데, 재무부서에서 그 자료들을 보내오면 필자가 일일이 번역하여 일본으로 보내는 일을 맡았다. 일본인들은 일 처리가 매우 꼼꼼하고 철저적인 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상대하는 것과는 달리 더 세심하게 일을 처리해야만 한다.

주주총회 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고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주주들로부터 위임장을 받는 절차가 있어서, 일본 주주들에게 전화를 하고 위임장 양식을 보내어 법인 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를 송달 받는 업무도 필자의 일이었다.

### III. 방송국 법무업무의 현상과 문제점

#### 1.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대응

방송국의 사내변호사는 방송법, 저작권법 등 매우 특수하고 새로운 영역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해 선배 변호사의 자문을 받기도 어렵고 교수님들께 질문을 드리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오히려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방송가에서 10년 이상 일한 차장급 간부들에게 새로 배우는 것들이 더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방송법 및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미디어랩법)의 개정과 관련한 이슈들이었고, 이러한 사안들에 있어서는 법률 전문가보다는 방송가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매우 필요했다.

그런데 현실에는, 변호사라고 하면 모든 영역에서 법률과 관련한 지식을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저작권 협상에 투입되어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 나가 보면 다른 방송국들의 경우 10년 이상 드라마 등의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해 본 팀장급 인력들이 대표로 나와 있었다. 그분들은 변호사가 나와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들을 하지만, 같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오히려 필자가 그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 2. 내부 보고 및 소통의 문제

이미 새로운 영역에 대한 법률적 업무를 함에 있어 회사 동료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함을 기술하였듯이, 실무에서 법률가는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사내변호사의 경우는 송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소송비용의 결제를 위해서 자신의 부서 외에도 재무부서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내부 보고 및 소통의 문제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경영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 보기 좋은 서식을 통해서 보고서를 올려야 한다. 그 내용의 충실함 이상으로 보기 좋아야 하는 형식성이 중요했고, 따라서 워드 및 PPT의 작성 능력이 매우 중시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정황을 겪고 나서, 로스쿨에서 간과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협상론 과목이며 성적 이상으로 보고 등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 3. 언론, 저작권 관련 소송에 대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건과는 별개로, 기사에 거명된 당사자들이 직접 회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기사의 신속성을 추구하는 언론사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소송은 늘 흔히 겪어야 하는 사안이었다. 법원으로 바로 제기된 정정보도 등의 청구는 손해배상액의 정도도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우보다 훨씬 큰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방적 법무가 더욱 중요하게 되므로, 최근에는 중요 기사가 나가기 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상파 방송국들과의 저작권 협상이 결렬되자, KBS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개시한 상황이다. 방송국에 대하여 저작(인접)권료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도 현재까지 무려 8개 단체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두컴’과 같은 새로운 단체들까지 출현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처럼 종래 관행적으로 무단 사용되었던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권 문제는 이제부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엄청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종합편성채널 방송국 4사도 KBS에 대한 소송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추후 청구되어 올 저작(인접)권료에 비상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 IV. 글을 마치며

아직까지 종합편성채널 방송국은 여러 면에서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고 필자를 제외한 변호사도 존재하지 않아서 법무 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직도



없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협회에의 등록비를 비롯하여 변호사로서 응당 받아야 할 대우들에 대해서, 필자 스스로 주장하고 협상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연봉협상 과정에 있어서도 사내 인사규정을 직접 뒤지면서 근거를 찾고, 다른 회사의 사내변호사들이 받는 대우를 직접 조사하여 제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앞으로 로스쿨 출신이나 기업에서 일하게 될 변호사들은 흔히 겪게 될 일이 아닐까 싶다.

최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의무연수기간 동안의 대우와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의무연수기간이 지난다고 하여 변호사들에 대한 대우가 획기적으로 좋아진다고도 확신할 수 없는 여건임을 미루어 볼 때, 이제 더 이상 변호사란 송무만 하는 직역이 아니며 급격히 늘어난 인원들 사이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경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할 때라고 여겨진다.

지도교수님이신 조성국 교수님께서 내가 졸업하게 된 시점에 해 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난다. “첫 직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평판을 쌓기 위해 노력하세요.” 이 말씀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부끄럽지만,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도 지식나눔 특강을 하는 등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PD와 기자 등 많은 실무진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면서 사내 제안 1등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전에 고시계에 일본 로펌에서의 실무수습 후기를 게재하면서 ‘가슴 벅찬 미래’를 준비하는 다짐을 글로 쓴 적이 있다. 고시공부를 하는 동안 무심코 말했던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꿈에, 낯선 땅 도쿄의 한가운데에서 서서히 다가가고 있음을 느꼈을 때. 그때의 섬찝한 희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수가 급증한 변호사들의 취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희한하게 인연이 닿아 얻게 된 방송국에서의 좋은 기회. 꿈은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어느 정도 믿게 된 만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라는 예전부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무소처럼 뚜벅뚜벅 걸어 나가고자 한다.

부족한 이 글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과 곧 법조계에 합류하게 될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수회에 걸쳐 기고의 기회를 준 고시계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수험생으로서, 학생으로서의 생활은 끝났다. 하지만 이제 겨우 시작이다! Real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로서의 세계를 향해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